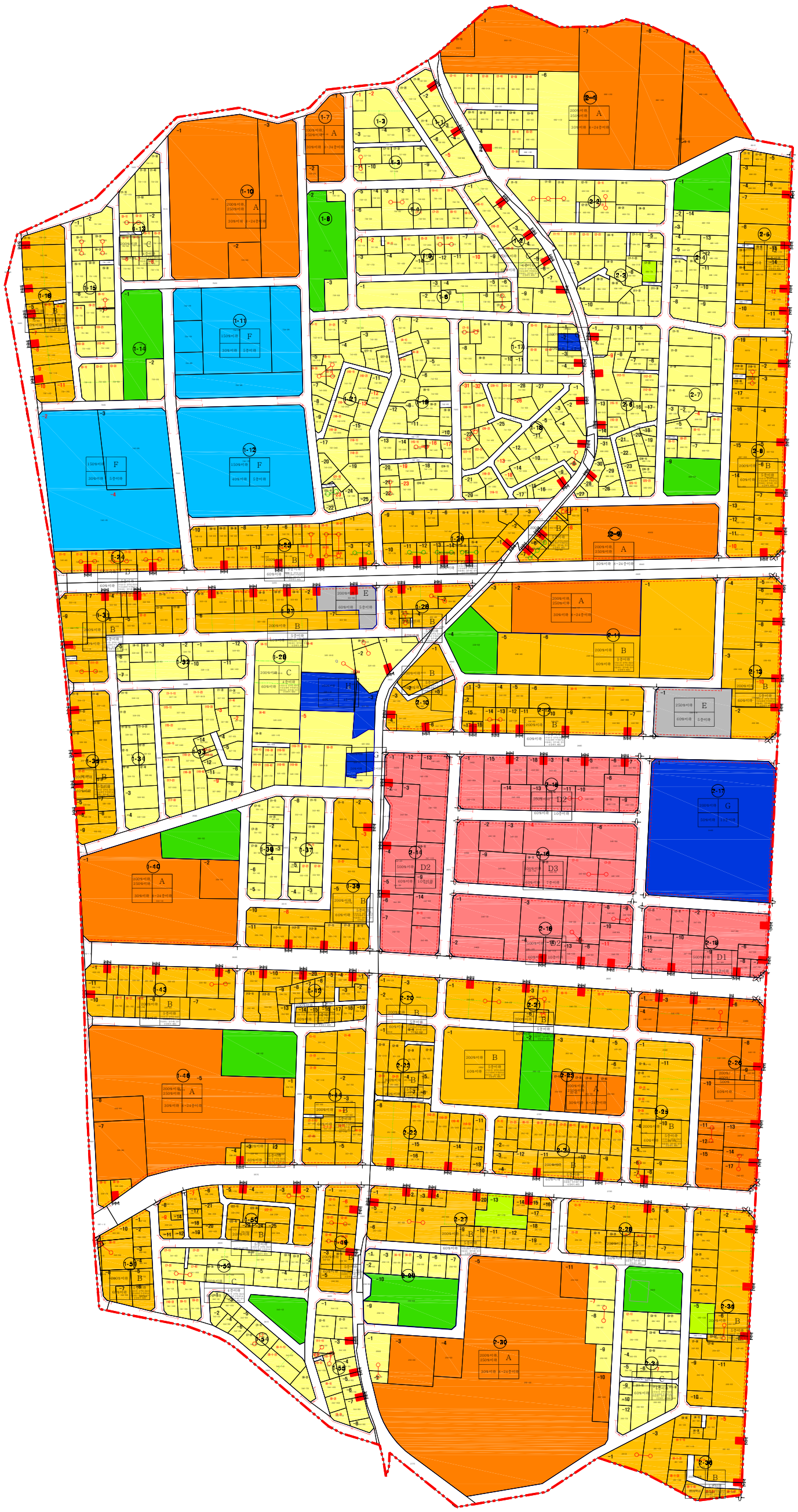

# 인천도시관리계획
# 연희1·2지구
#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

## 가구 및 획지등에 관한 계획(변경)도

### ■ 범 례

- 지구단위계획구역
- 가구경계선
- 건축한계선
- 대지분할가능선(권장)
- 차량출입불허구간
- 공동주차(권장)
- 공동개발(권장)

| 용적률 | 용도 |
|---|---|
| 건폐율 | 높이 |

| 구 분 | A | B | C | D | E | F | G | H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지정 용도 | 공동주택용 시설의 | — | — | — | 주차장 | 학 교 | 공공청사 | 식품위생시설 |
| 현장 용도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
| 계획 용도 | — | • 관련법령에 따라서 허용되는 건물을 | • 관련법령에 따라서 허용되는 건물을 | • 관련법령에 따라서 허용되는 건물을 | — | — | | |
| 활용 용도 | — | • 공동주택용 시설의 용 | • 근린생활시설<br>(단, 1층 및 2층에 한하여는 가공에 편리한 식품제조 고물상인 소 기계하역 건축물의 용도를 인 허용)<br>• 판매 및 영업시설<br>• 주차장<br>• 관련공공청 및 복리시설 | D1 D2 D3<br>• 공동주택<br>• 노인주택<br>• 유치시설(유중유치시설이외의 용도)<br>• 교육시설<br>• 관련공공청 및 복리시설<br>(유치원과 초등학교 용도)<br>• 예술과관련시설(주차장이외의 용도)<br>• 공공용시설<br>(청소년 및 근린생활시설이외의 용도)<br>• 관광휴게시설 | — | — | — | — |
| 건폐율 | 30%이하 | 60%이하 | 60%이하 | 60%이하 60%이하 60%이하 | 60%이하 | 30%이하 | 30%이하 | 60%이하 |
| 용적률 | 200%이하<br>250%이하 | 200%이하 | 200%이하 | 500%이하 500%이하 500%이하 | 250% | 150%이하 | 200%이하 | 200% |
| | | C.S.ratio | A.S.ratio | | | | 상업지역 / 근린지역 | |

10 0 20 50 100 150m